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태열 (외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5. 7. 8. 시행 예정인바, 이를 반영하여 외무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(안 제45조의4제1항제2호·제2항제2호)

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

나. 참서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격 규정 신설(안 제45조의4제2항)

- 참서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격을 가능케 하는 규정 신설

다.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 절차 도입(안 제45조의4제5항·제6항·제7항)

-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
- 다만, 공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

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
하는 경우, 특별임용 후 30일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가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“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”를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(중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제1항제1호”를 각각 “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외교부장관은 참서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위 직무등급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이 법 제18조와 「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
2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

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.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.

⑥ 공무수행 중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,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, 외교부장관은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의4(특별임용) ① 외교부장관은 참서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8조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45조의4(특별임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</u>	2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-----
<신설>	② 외교부장관은 참서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위 직무등급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이 법 제18조와 「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	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,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제3항제1호·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

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

2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

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-

-----.

그 특별임용 전의 직무등급으로
퇴직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
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공적심
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. 위원
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외
교부장관이 정한다.

⑥ 공무수행 중 사망하여 사망
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
한 공적이 있어 특별임용의 긴
급한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
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
호 및 제2항제2호, 제5항에도
불구하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.
이 경우 특별임용일로부터 30일
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
를 거쳐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
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
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
거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
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
된 경우, 외교부장관은 특별임
용을 취소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인사기획관	
연 락 처	(02) 2100 - 7152